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되찾는 법인세 환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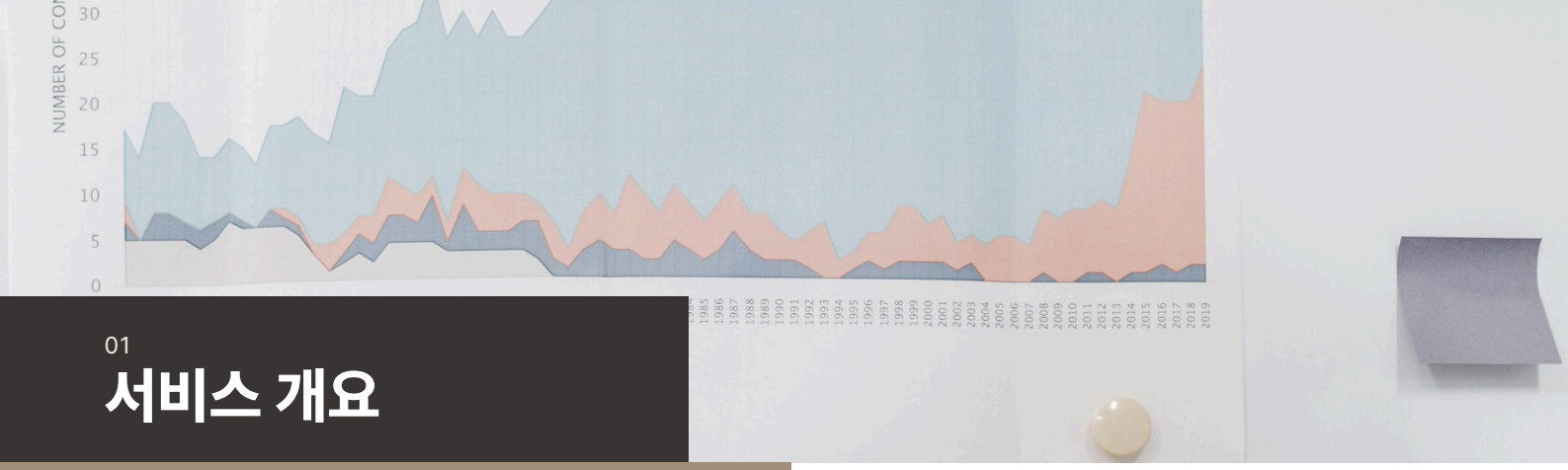
회계법인 리파인드

경정청구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이미 낸 세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검토 결론

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연도의 과다 납부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의2①).

12월 결산법인 2021 사업연도분은 2027.3.31에 끝납니다. 납부 후 신고를 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붙고 기본이자율은 연 3.1%입니다.

성립 조건 4개

1
청구기한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2
신고서 제출
무신고 결정만 받은 연도는 통상 청구 제외

3
초과 신고
세액 초과 또는 공제·환급세액 미달

4
감면 요건 충족
요건과 별도 신청 절차를 갖춘 경우

이런 분께

- 과거 신고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을 수 있는 대표
-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기업
- 세무서의 경정 통지 뒤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분
- 법인세 환급 뒤 법인지방소득세 처리까지 정리하려는 분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신고서 진단	최근 5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고 연도별 청구기한을 계산합니다. 감면·공제 적용 여부와 신고 방식(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을 함께 봅니다.
2 요건 판정	연도별로 감면·공제 요건, 신청 절차, 중복 적용 배제, 이월 가능 여부를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청구 뒤 한도 차감이 생기는 연도는 이 단계에서 미리 계산합니다.
3 청구서 제출	결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과 청구 이유를 적은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25의3①).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냅니다.
4 환급·불복	접수 후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합니다.



02

경정청구 구조와 환급액

환급은 청구서가 아니라 세무서장의 감액 결정으로 생깁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세액보다 많다고 보아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서를 낸다고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감액 결정을 하면 그 금액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됩니다(국세기본법 §51①). 청구서에는 결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과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도해 1. 경정청구 환급 흐름

신고서 점검
연도별 기한·감면·공제 확인

→

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세무서장 통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

환급 결정
환급금 + 환급가산금

→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청구

환급액 = 과다 납부세액 + 국세환급가산금

납부 후 신고를 경정해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국세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52①, 시행령 §43의3①1호). 기본이자율은 시행규칙 §19의3에서 정하며 현행 연 3.1%입니다(2025.3.21 이후). 불복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뒤에 지급하면 1.5배입니다(시행령 §43의3②). 감면 결정이나 법 개정 같은 다른 사유는 기산일이 다릅니다.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충당됩니다(§51②). 경정청구나 불복 없이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52③). 기한 안에 청구해야 이자만큼 더 돌려받습니다.

근거: 근거: 국세기본법 §45의2, §51①·②, §52, 시행령 §25의3①·§43의3, 시행규칙 §19의3

도해 2. 청구 유형별 기한

같은 연도라도 청구 사유에 따라 기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청구 유형	기한	적용 예
통상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45의2①)	12월 결산법인 2021 사업연도분: 법정신고기한 2022.3.31, 청구기한 2027.3.31
증액경정 부분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45의2① 단서)	세무서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이 대상
후발적 사유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45의2②)	계약 해제,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등(국세기본법 §45의2②1호, 시행령 §25의2)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기본법 §50①)	법인세 청구와 함께 또는 따로 청구합니다. 신고기한이 4개월이라 법인세보다 1개월 늦습니다(지방세법 §103의23①)

※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5①).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6개 항목은 청구 가능 연도와 환급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01 청구기한 계산

12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2020 사업연도분의 청구기한은 2026.3.31에 끝났고, 2021 사업연도분은 2027.3.31까지입니다. 실제 신고일이 늦었어도 기한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4개월이라 날짜가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통상 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날짜부터 확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60①, 국세기본법 §45의2①

02 신고 방식과 감면 배제

무신고로 결정된 연도와 기한 후 신고를 한 연도는 창업중소기업 감면(§6)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무서가 경정한 경우와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 부분은 같습니다. 추계로 결정·경정한 연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등이 배제됩니다. 신고 방식을 모르고 청구하면 환급액 계산이 처음부터 틀립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28①·②·③

03 감면·공제 선택과 이월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감면 규정 둘 이상이 적용되면 하나만 고릅니다(§127⑤). 감면과 세액공제가 겹치면 하나를 고르고, §6 감면 연도에는 §29의7·§29의8 공제를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127④). 과세연도를 달리하면 중복 배제가 아닙니다(서면-2017-법인-0363).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7이고,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첫 3년은 8%, 다음 2년은 9%입니다. 다만 §6①·⑥ 100%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132①4호 가목). 이월공제는 최저한세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대상입니다(§144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27④·⑤, §132①, §144①

04 요건·신청·한도

§6⑫과 §7④는 감면신청을 요구하고, §7 감면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6⑧). 그래서 당초 신고서 사본에 감면신청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서가 있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이어서 판정하고, 없으면 해당 연도 청구 가부를 상담에서 판정합니다. §7 감면은 한도 1억 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줄었으면 1명당 500만 원이 차감됩니다(§7①3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6⑫, §7①3호·④, 시행령 §6⑧

05 후발적 사유

통상 기한이 지난 뒤에도 거래가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거나(§45의2②1호)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거나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시행령 §25의2 2호)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세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같습니다(§45의2②4호). 동종 쟁점에서 과세관청 해석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사유는 법령 해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해 후발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두28254, 2014.11.27.).

근거: 국세기본법 §45의2②, 시행령 §25의2

06 청구 뒤 위험과 연동 세목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라도 청구를 접수하면 2개월 동안 세무서장이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26의2⑥3호). 그래서 청구 전에 해당 연도 신고서 전체를 점검하고 청구서에 적을 항목을 정합니다. 법인세를 환급받아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합니다(지방세기본법 §50①). 통지 없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45의2③). 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54①).

근거: 국세기본법 §26의2⑥, §45의2③, §54①, 지방세기본법 §50



04

판정 순서와 일정

신고 방식, 5년, 감면 요건 순으로 판정하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청구 이후 일정

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 2021 사업연도분은 2027.3.31까지입니다.

접수 후 2개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진행 상황만 통지하기도 합니다(§45의2③·④).

통지가 없을 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5의2③).

거부 통지 후 90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61①, §68①).

결정 통지 후 90일
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고(§56②),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불변기간입니다(§56③·⑥).

도해 4. 청구 전 판정 순서

확인 질문	결과
1. 기한 내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나요?	제출했으면 통상 청구가 가능합니다(§45의2①). 무신고 결정만 받았으면 후발적 사유(§45의2②)만 봅니다. 기한 후 신고였다면 §6·§7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8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인가요?	넘었으면 통상 청구는 끝났습니다. 증액경정분과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의 별도 기한을 확인합니다.
3. 과다 납부의 원인이 감면·공제 미적용인가요?	§127의 선택과 중복 배제, §6·§7의 신청 절차, 최저한세 반영(§132①)을 연도마다 다시 판정합니다.
4. 감면 기간 중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적이 있나요?	§6 감면을 받은 기업이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없습니다(조특법 §6⑪). 청구 전에 영향을 계산합니다.
5. 청구서에 적을 항목을 확정했나요?	접수 후 2개월 동안 경정이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26의2⑥3호). 적지 않은 항목은 별도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6.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했나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청구합니다(지방세기본법 §50①).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최근 5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감면·공제 신청 내역. 이 3가지가 있으면 청구 가능한 연도와 환급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공제를 검토하는 연도는 상시근로자 수 자료도 필요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5년이 지난 연도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통상 경정청구는 기한이 끝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의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연도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안에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는 2009년 회신이 있습니다(징세과-110). 다만 납세자에게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으면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52③, 징세과-1370). 기한 안에 청구하는 쪽이 환급액이 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45의2, §52③, 징세과-110, 징세과-1370

Q2. 법인세 환급을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돌아올까요?

아니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후발적 사유로 청구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50②).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청구서를 두 곳에 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50①·②·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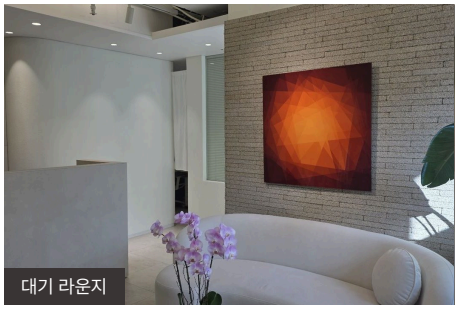
Q3. 이미 신고한 감면을 다른 감면으로 바꿔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감면 종류를 바꾸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2006.5.2.). 다만 구법 시기 사안입니다. 바꾸려는 감면이 신청을 요구하는 규정이면(조특법 §6⑫, §7④) 신청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127⑤). 바꾼 결과의 감면액이 한도(§7①3호의 1억 원)를 넘거나 상시근로자 감소로 한도가 줄 수 있어 연도별 합산액을 비교한 뒤 정합니다. 이월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한 금액만 대상입니다(§144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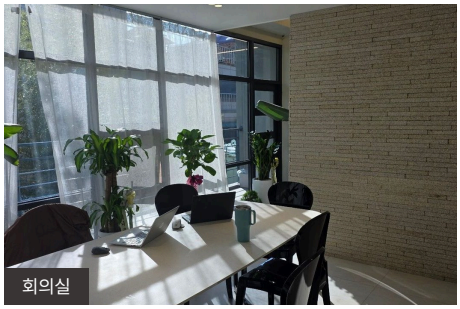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27⑤, §7①3호·④, §144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담당 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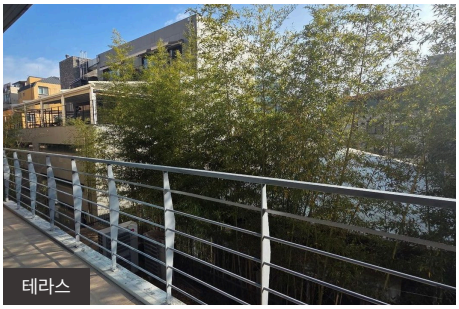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세무법인 엑스퍼트 소속)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